

2019년 1학기 주요 개선 사항

①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(2.20%) [국정과제]

- 학생·학부모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기준금리 및 시중 조달금리 인상 추세 등에도 불구하고 '19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직전학기과 동일한 2.20%로 동결 및 저금리 기조 유지

국정과제 49.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-대학등록금 및 주거 부담 경감-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

②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 완화

- 국세청(세무서)으로부터 ICL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ICL 상환유예기간 이내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상환유예 신청기회를 부여하여 경제적 곤란자 지원 강화

※ 단,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사유 중 실직(퇴직), 폐업, 육아휴직에 한함

③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 변경

-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를 기존 학기당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하여 대학(원) 미등록에 따른 생활비 대출금 반환의 용이성 제고

※ 단, 학기당 생활비 대출한도(150만원) 내에서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후 잔여 금액은 등록 후 실행 가능